

주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۲-۱	기	관	의	장	
선					
람					

정기 제511호 2023, 6, 15, (목)

#### 례 장수군 조례 제2664호 장수군 조례 제2665호 장수군 조례 제2666호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장수군 조례 제2667호 장수군 조례 제2668호 장수군 조례 제2669호 장수군 조례 제2670호 장수군 노인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장수군 조례 제2671호 장수군 조례 제2672호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장수군 조례 제2673호 장수군 조례 제2674호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장수군 조례 제2675호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109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115 장수군 조례 제2676호 장수군 조례 제2677호 장수군 조례 제2678호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9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133 장수군 조례 제2679호 장수군 조례 제2680호 규 칙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37 장수군 규칙 제1210호 장수군 규칙 제1211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41 입법예고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44 장수군 공고 제2023-723호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152 장수군 공고 제2023-724호 장수군 공고 제2023-737호 장수군 공고 제2023-739호 공 고 장수군 공고 제2023-748호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3공구)』 보상계획공고 ············· 180 회 람

장 발행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조례 제2664호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레**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청소년이 교육·문화·체육·진로체험·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 2.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

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 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 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 기간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사용자에게 매년 2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 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지원대상자 본인
  -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6조(발급신청 등)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 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 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연2회 나누어 지급한다.
- 제8조(카드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수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가맹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바우처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포인트를 생성한 당해연도까지로 하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1.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 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하다.
- 제14조(매출금의 지급) 군수는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ス	세.	1 すん	] 식
		L —	1 - 1

장수군	청소	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처리	(앞쪽) <b>신청서</b> 의기간 : 즉시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청소년)	주 소	자택 : <b>전화번호</b> 휴대전화: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성 명	생년월일	
u = lol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	외[ ]
	2. 「국 따른 소년 꿈키;	<ul> <li>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기</li> <li>'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음</li> <li>라우처 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병</li> </ul>	·족지원법」에
(재)발급을	선정합니다	년	월 일 <b>서명 또는 인</b> )
	성 명	생년월일 <u>× × ×</u>	
법정대리인 동의란	주 소	<b>전화번호</b> 자택 : 휴대전화:	
		법정대리인 (서	서명 또는 인)
비고			수수료 없 음
장수군	· <b>수</b> 귀하		<u> </u>

(뒤쪽)

-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5.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탁인에게 양도, 대역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	처 카드 (재)발급 위임장
<b>지원대상까</b> (청소년)	성명 :	생년월일 X X X X X X
	성명 :	생년월일 X X X X X X
수임자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X X X X X X
(법정대리인 또는	주소 :	
시설대표자)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	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군

[별지 제3	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b>키 꾼</b> 키	I욱 바우	차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	ᅥ
1. 가맹점		_		~ ~ ~ ~ ~	7100	~,0		
상 호	-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			생년월일	×	××	××	-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		ı ı	· · · · · · · · · · · · · · · · · · ·			,	
2. 계작정	보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u>ই</u>							
· ※ 매출대금	급 입금을 위	위한 정보인	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	니다.			
ე ⊒⊩⊏ნ	달말기 정	н						
				단말기 관리	J회사			
카드단말기		<u> </u>		연락차				
	•			를 반드시 기				
「장수군 청	소년 꿈키음	를 바우처 🤊	카드 지원 조리	ᅨ」제11조제1항	에 따라 청소	년 꿈키음	로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원	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	명 또는 역	인)
장수급	<b>근수</b>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지	나등록증 /	사본 1부, 2	2.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군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	점 지정	변경 신경	정서
(기맹점 번호 : 장수 1. 가맹점 정보	- <u>ō</u> )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 × ×	- ×
주 소	<u>'</u>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ı				
2.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	경 후	비고	
L ※ 변경사유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	원 조례」제11:	조제1항에 따	라 청소년 꾿	급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b>라</b>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 인)
<b>장수군수</b> 귀	하 적 지정서 1부.				
	덬 지정 계약서(대표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ull 사원/	

별지 제5호서식]		
장수군 청소년 꿈키	움 바우처 카드 가맹	점 지정 해지 신청서
(기맹점 번호 : 장수 -	호)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1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장 소재지	,	
2. 해지사유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b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ö	_	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반납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	이 너	

[별지 제6호서식]

장수 - 호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O 조 재 지 :

○ 정 명: ○ 생년월일(정별): . . .( )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1. 제정이유

○ 보편적 복지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에 대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제1조 ~ 제2조)
-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3조 ~ 제4조)
- 신청주체, 발급신청 및 포인트 지급 방법 (제5조 ~ 제7조)
- 카드의 사용처.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중지 및 환수 (제8조~ 제10조)
-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지도·감독, 매출금의 지급 (제11조 ~ 제14조)
-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5조)

장수군 조례 제2665호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 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 다.

보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비고
	가			
영아종일제, 시간제 및	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50%	
의병감염아동 질병감염아동	다	소득기준 적용		
	라			

<sup>※ 「</sup>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sup>※</sup> 지원한도: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별지 제1호서식]

[벌시 세1요	멀시 제1호석식]					
	 장수	-군 아	이돌봄서	비스 지	원 신청 <b>서</b>	1
 신 청 인	성 명	<u>.</u>	생	[년월일		성별
건경된	주 소		,	'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구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가형 🗌 나형	간제/종일제 月 □ 다형 □ 라형 □
대상자					가형 🗌 나형	간제/종일제 ∮ □ 다형 □ 라형 □ 간제/종일제
						산세/당월세 ] □ 다형 □ 라형 □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	취업 한부모	□ 맞	벌이 🗆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아동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	에서 함께 거	주하는 아동 브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서비스 제	공기간 동안	장수군에 측	주민등록을 두	F고 계속 거족	주하지 않을 경	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인	ː 지급된 지원	금을 환수	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을 신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띠	<b>나라 장수군 아</b>	이돌봄서비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b>장 수 군 수</b> 보이으 c		]이 과러치	.여 다다지의	이 「저지저,	보버 제36조·	에 따라 행정정보 공
					확인하는 것에	
					독립하는 첫개 출해야 합니다.	
* 0 -1 01/	1 6 6 0 1		인 :		물에 두 납디다. (서명 또는 인	
				용 및 제공 동 <b>의</b>		<i>'</i>
본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1항(개인정보의 제공)
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할 경우 장수군					
			등의함 [ 신청인	] 동의하지 읺	<u>-</u>	(서명 또는 인)
			'건경건			(기당 고단 전)

#### 1. 제정이유

○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제1조 ~ 제2조)
-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3조 ~ 제4조)
-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제5조 ~ 제6조)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 ~ 제8조)

장수군 조례 제2666호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결혼축하금 지원의 지원대상 및 내용란 기호(-) 중 "만 19~49 세"를 "19~49세"로 한다.

제2조(「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장수군 지방공 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항 본문 중 "만 4세"를 "4세"로 한다.

#### 제3조(「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3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의	l 대상 순위	1의 65세	이상 노역	<u> </u> 인란 중 "만 65	세"를 "65서	메"로 하고,
같은 3	표 대상 순	위 2의 65세	이상 노역	인란 중 "만 65	세"를 "65서	레"로 한다.

제5조(「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의 개정)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 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50세이상 만 65세 미만"을 "50세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 제7조(「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

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19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만6세이하"를 "6세 이하"로, "만65세이상"을 "65세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반ㆍ청소년ㆍ군인 65세 이상 어린이 비 고
------------------------------

제8조(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장수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5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제10조(「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 제11조(「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의 성인의 정의란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목청소년의 정의란 중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목 어린이의 정의란 중 "만 5세 이상 만 13세 미만"을 "5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다.

제12조(「장수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장수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지 서식의 기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14조(「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의 개정)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15조(「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의 개정)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6조(「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2의 대상포진의 감면대상자란 중 "만50세"를 "50세"로 한다.

제17조(「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장수군 한누리영화관의 대상란 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8조(「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 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결혼축하금 지원	- 자원자격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만 19 -49의 여하의 남녀로 자원신청일 현재 부분기 함께 장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ੜ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한 지원 · 과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정소 지급을 하는 경관 장금 연구 결혼축하금을 최초지급 반은 날로부터 1년 아내에 환원 · 전출·이혼 또는 하위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혀 환수	- 지원자격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제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19 - 48세 이하의 남녀로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 외국인 배우지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한 지원 · 최조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조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장수시랑 상품권 지급) - 지원금 환수 결혼축하금을 최조지급 반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로윈 전출・이혼 또는 해외·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관계 환수

#### 2.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⑬ (생	제23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
략)	과 같음)
④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	(4) <u>4</u> +
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	
가를 받을 수 있다.	

## 3.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의	1
규정에 의해 <u>만13세</u> 미만으로	<u>13세</u>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	2
법」의 규정에 의해 <u>만19세</u>	<u>19세</u>
미만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4.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격 및 신청) ①식료품 등	제4조(자격 및 신청) ①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	2
른 <u>만65세</u> 이상인 자	<u>65세</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별표]

대상 순위	모20세 의상 강예인	1965세 의상 노인
1	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갱끝보 장함에 따른 수 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 기술 제공보장 범인 따든 수 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 인으로 공인기 추정골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85세 이상 노인으로 중민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대상 순위	20세 이상 광예인	65세 이상 노인
1	장애정도가 심 한 참애인으로 국민기초맹끝보 장법에 따든 수 급자	65세 이상 노인 으로 궁민기초 계골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잠애 이으로 공민기 추정괄보장벌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으로 국민기류 캠골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 외의 사람

## 5.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u>만65세</u> 이상의 사	1 <u>65세</u>
람을 말한다.	
2.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6.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1
제16조에 따른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의	<u>만</u>	65세
이상의	주민을	는 말한다	ł.	

- 2. (생략)
- 3. "장년층 1인가구"란 「지방자기법」 제16조에 따른 군관내의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주민 중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나. (생 략)

4. ~ 6. (생략)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로 선정한다.

-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
  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
  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 2.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생활수 급자, 장애인)에 대해 매년 현 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_
_
_

등이 취약한 장년층 1인가구 3. • 4. (생략)

3.•4. (현행과 같음)

### 7.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u>만</u>	5 <u>7세</u>
<u>7세 이상 만 12세 이하</u> 인 사람	이상 12세 이하
을 말한다.	
6. 청소년 : <u>만 13세 이상 만 19</u>	6 <u>13세 이상 19세 미만</u>
<u>세 미만</u> 인 사람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일반 : 군인을 제외한 <u>만 19</u>	8 19세 이
<u>세 이상 만 65세 미만</u> 인 사람	<u>상 65세 미만</u>
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감면) ①
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	
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만6세이하</u> 인 자 및 <u>만65세이</u>	3. <u>6세 이하</u> <u>65세 이</u>

<u>상</u>인 자

4. ~ 15. (생 략)

②・③ (생 략)

[별표 1]

3, 도깨비전시관 입장료

(단위 : 원/1인)

<del>구분</del>	일반·청소년·군인	만 65세 이상	었린이	<u>H_Z</u>
게 인	1,000	무료	무료	※단체 20인 이상
단최	500	무료	무료	※현계 GD 현 역명

<u>상</u>----

4. ~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3. 도깨비전시관 입장료

(단위 : 원/1인)

구분.	일반·청소년·군인	65세 이상	에 린 이	비 고
게 인	1,000	무료	무료	*단체 2D인 이상
<u>단 ᅨ</u>	500	무료	무료	ж 한게 LD 한 시18

### 8.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9.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년"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3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u>만 15</u> ----- <u>15세</u> 을 말한다.

<u>세 이상 만39세 이하</u>의 사람 <u>이상 39세 이하</u>-----

### 10.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장수군(이하	1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만 15세</u> 이상 49세	<u>15세</u>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	
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	
적으로 적용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11.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각종 시설 사용료(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감경사항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사용료	1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	민등	록이	장수	누군에	되
(	어	있는	자,	전북	투어	패
\$	스	제시	자,	문화	·체육·	관광
-	부。	에서 :	추진:	하는	여행	주간
,	フ] て	ː , 명	를 절 연	후기	간, 3	팸투
(	어,	군	주최	행사	참기	가자,
,	장수	누군	시티	투어	탑승	· 하자,
1	만	65세	이싱	- 노인	], 국기	가유
	공기	<b>計</b> ,フ	호수	급자	, 장이	ㅐ인,
1	병약	부명둔	느가	: 10	0분의	50
;	감경	딍				

다.•라. (생 략)

2. (생 략)

②・③ (생 략)

#### [별표]

#### 다. 이용자 구분

구분	정의
성인	만 19세 이상인 <mark>사</mark> 람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5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다.•라.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별표]

#### 다. 이용자 구분

구분	정의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 또는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 12. 장수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	제2조(정의)
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	
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군에 주소	
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만 65세</u> 이상 단독세대	6. <u>65</u> 4
[별지 서식]	[별지 서식]
□ 수 급 자 □ 차상위계층 □ 장 애 인	□ 수 급 자 □ 차상위계층 □ 장 애 인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한부모 □ 다문화 □ 청소년
□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 □ 일 반	□ 65세 이상 단독세대 □ 일 반

## 13.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	제2조(정의)
전자"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	
람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는 <u>만 70세</u> 이상의 사	<u>70</u> A)
람을 말한다.	

## 14.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성공자"란 <u>만19세</u> 이상	1 <u>19세</u>
이면서 흡연을 하고 있던 자	

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후 만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자를 말한다.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15.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 16.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장수 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 1. 만 65세 이상 주민
- 2. (생략)
- ③ (생략)

#### [별표 2]

及全元

하누리

영화판

예방접종명	감면 돼 상 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50세 이상 군민 중		
	기초캠괄수급자, 차삼위계증,		
대상포진	잠매인, 국가유공자		
	장수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	

- 1. 65세 -----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별표 2]

예방접종명	감면 돼 상 자		
대상포진	장숫군에 주소를 둔 5D세 이상 군민 중 기호캠홀수급자, 차상위계증, 잠애인, 국가유공자		
	<u>장순군에</u>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정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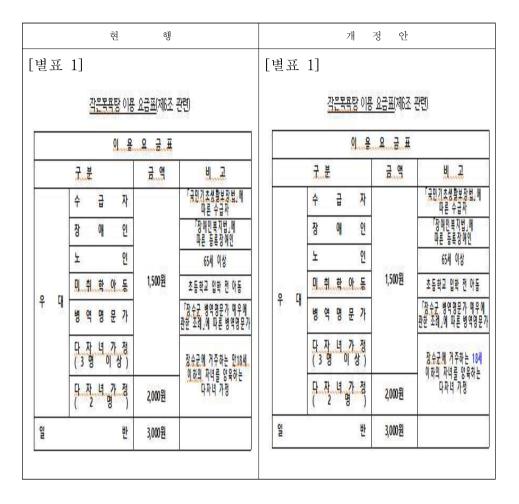
## 17.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별표 1] [별표 1] 1. 만 18세 비만이 사람 1. 18세 비만인 사람 [노인복지템]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6세 이상 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캠프」 제67조, <u>감</u>...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별륜」 제87조, 참... ....운 법 시행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했다. 4. 「독립유공자애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실행됐. ...세요중에 따른 독립유공자 5. 「참진유공자 예우 및 단제설립에 관한 법률 』 세10조 5. 「참전유공자 애우 및 단재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같은 병 시행당 제10조에 따른 창전유공자 및 같은 법 시행당 제반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6. 「독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재설립에 관한 법률」 세74... 6. 「독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재설임에 관한 법률」 제74... . 휴 및 같은 법 시행당 제58조에 따른 등수있도요공자 7.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자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중명서 7.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제설립에 관한 법

지장 윤1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당 제10조의3에 따른 고열 ... 세 표」제8조의3 및 같은 법 사행당 제10조의3에 따른 고엽 ... 제 及完定 문지가도 充分受职人 유유증환사 8. F5·18 민준유공사에우에 관한 법률 ] 제59조, 같은 법.... 신문증. 한누리 1전원 8. 「5·18 <u>민주유공자예우에</u>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당 제52조에 따른 5 - 18유공자 구빈동특 ...시했던 제52조에 따른 5 · 18유공자 9. 「장애안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신한 장애인과 그와 영화관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짓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와 두분,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10.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 11.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급여를 받는 자 10. 「군인상병」,제23.제1호에 따른 군인 11. 「국민기송생활보장병」에 따른 수급자로 급여를 받는 자 중명서 등) 12. 『장수 군민의 장 조레』에 따른 군민의장을 수의받은 자 12 [장수 군민의 장 조례』에 따른 군민의장을 수여받은 자 13. 『장숫군 다자녀가정 공공사설을 이용 지원에 관한 조 13 「장수군 다개기가정 공공시설을 이용 지원에 관한 조 레 1 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 레 1 에 따라 자녀가 3억 이상인 가장 14. 「한부모가족지원밥」에 따른 지웠대상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웠대살자 ※ 단. 일반영화(2D)에 한하며, 중복 착용되지 않 \*\* 단. 일반영화(2D)에 한하며, 중복 착용되지 않

# 18.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군



## 1. 제정이유

○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는 만 나이 통일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일괄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제1조 ~ 제18조)

장수군 조례 제2667호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 1. 폐지이유

○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장수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장수군 조례 제2668호

#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장수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 외 활동
-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 ·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 1.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 2.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
  -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홍보대사 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
- 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을 비치한다.
- 제7조(예우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단,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

부 칙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주 소:

귀하를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년)]

년 월 일

장수군수 〇 〇 〇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 ○주관부서 및 담당 00000 / 000					
주소 및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별	남 / 여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연 락 처			
주요 경력 및 여	이력				
홍보대사 선정	 사유				
0 - 11 - 2 0					
일자별 활동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주	소	직	업	연락처	위촉기간	위촉사유	담당	위 축 해 제 일 및 해제사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 1. 제정이유

○ 장수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장수군 홍보 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수군 홍보대사 활동 (제2조)
- 홍보대사 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 ~제4조)
- 장수군 홍보대사 예우 (제7조)
- 홍보대사 활동 저작권 귀속 등 (제8조)

장수군 조례 제2669호

#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수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유학 육성
  -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유학시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 농촌유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장수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촌유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2.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직원
- 3. 농촌 유학 관련 전문가
- 4.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 5. 농촌 유학 활동가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 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 제정이유

○ 농촌학교와 마을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수지역의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제2조)
- 농촌유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5조)
-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제6~8조)
- 농촌유학 협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조)

장수군 조례 제2670호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례식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장계 공설장례식장

2.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1876

부 칙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장례식장은 장수군	제3조(명칭 및 위치) 장례식장의
<u>장계면 진장로 1876에 둔다.</u>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
	<u>다.</u>
	1. 명칭 : 장계 공설장례식장
	2.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u>1876</u>

#### 1. 개정이유

○ 공설장례식장의 명칭을 "장수군 공설장례식장"에서 "장계 공설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외부 유족 및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례식장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추가 (제3조)
  - 명칭변경: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 장계 공설장례식장
  - 기존에는 위치만 표기하였으나 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 조문 추가

장수군 조례 제2671호

장수군 노인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노인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만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날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를 "달부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청구한"을 "결제한"으로 한다.

## 부 칙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노인 이ㆍ미용비	제2조(지원대상)
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 65</u>	<u>65세</u>
<u>세이상</u> 의 자로 한다. 다만, 노인	<u>이상</u>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 군수는 지원	제5조(지급시기) ①
금을 매년 1월 1일(이하"지원	
기준일"로 한다)부터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	
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u>날의</u>	<u>달부</u>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	<u> 터</u>
지급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제9조(환수처리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	
한하거나, 이ㆍ미용업소 사업주	
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	2

법으로 이・미용업소 사업주	
가 <u>청구한</u> 사실이 발견된 경	결제한
<u> </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1. 개정이유

○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신규 대상자의 지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에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로 변경하여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 2.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하여 "만"을 삭제 (제2조)
  - 지원대상을 "만 65세이상의 자"에서 "65세 이상의 자"로 변경
-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 (제5조)
  - 지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에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로 변경
- 사업절차에 맞게 용어 변경 (제9조)
  - "청구"를 "결제"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절차에 맞게 용어 변경

장수군 조례 제2672호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의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를 "달부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청구한"을 "결제한"으로 한다.

부 칙

# 신・구조문대비표

군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라	제3조(대상자) ①
목욕비 지원을 받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매년 1월 1	
일(이하 "지원기준일"이라 한	
다) 현재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작	
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취약계층으로 한다. 다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으로	
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	
를 지원받는 사람과 <u>만 3세</u> 미	<u>3세</u>
만의 아동은 대상자에서 제외한	
다.	
②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②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u>분기</u>	<u>달부</u>
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	<u>터</u>
<u>여</u> 지원을 받는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제9조(환수처리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	
한하거나, 목욕장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1. (생략)
-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장 사업주가 <u>청구</u>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

----- <u>결제</u> 한 -----

3. (현행과 같음)

#### 1. 개정이유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신규 대상자의 지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에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로 변경하여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 2. 주요내용

- 만나이 규정 삭제 및 신규 대상자 지급시기 변경 (제3조)
  - 제3조제1항의 "만 3세"를 "3세"로 변경
  - 제3조제2항에서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월할 계산하여"를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로 변경
- 사업절차에 맞게 용어 변경 (제9조)
  - "청구"를 "결제"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절차에 맞게 용어 변경

장수군 조례 제2673호

#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 2.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 3. 청원경찰
- 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 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심리 상담
  - 2. 의료비
  -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 5.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 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 2.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 성 관련 문구 붙임 등
- 제8조(지원 기준)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 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 [별표]

# 민원 처리 담당자 등 지원 기준(제6조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내용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6조제1호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부서 연계
의료비	제6조제2호	50만원 이내	1. 병원 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청구)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3호	2시간/일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 (최대 4시간/일)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제6조제4호	법률 상담 서비스 등	법률·소송 부서 연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제6조제5호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 부서 연계

[별지 서식]

##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10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연 락 처		
파에 6구권	∘ 성 명: (□남, □여)			
민원 내용	• 민원인명: 민원인 전화반	년호 :		
그런 내중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 구체적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심리상담( ) 의료비( ) 휴	식시간( ) 법률상담( )		
	예방·치유 교육(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 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			
	니다. 🗆			
	<ul><li>※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li><li>1. 예 □ 2. 아니오 □</li></ul>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을 반영하여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 (제1조~제4조)
- 지원 사항,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 (제6조~제7조)
-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신청 (제8조<sup>~</sup>제10조)
- 지원 결정 (제11조)

2023. 6. 15.(목)

장수군 조례 제2674호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제7조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	
계획서를 <u>군수</u> 에게 제출하여야	<u>부군수</u>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의 한도) ①연구비는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예산의 범위안에서 1과제에 대	
하여 <u>400만원</u> 이하로 지급한다.	<u>500만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①연구비는 월별	제5조(지급방법) ①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	
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u>군수</u>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	<u> 부군수</u>
2014.04.22. 제2019호>	
제6조(지급 제한) [제목변경 2014.	제6조(지급 제한) [제목변경 2014.
04.22. 제2019호] ①군수는 연구	04.22. 제2019호] ① <u>부군수</u>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목	
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2014.04.22. 제2019호>	

제7조(보고)
<u>부군수</u>

#### 1. 개정이유

-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개정(2022. 1. 17.)됨에 따라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사무)제1항에 의거 결재권자 변경
-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 인력(의사)의 임상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비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여 반영

#### 2. 주요내용

○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결재권자 변경

균

-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 제5조(지급방법)제1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 제6조(지급 제한)제1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 제7조(보고)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 제4조(지급의 한도)제1항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 조정(현행) 1과제 당 400만원 ⇒ (개정) 1과제 당 500만원

장수군 조례 제2675호

#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관광지"를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또는"을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만7세이상 만12세이하"를 "7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13세이상 만19세"를 "13세 이상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하사이하인 군인과 전투경찰 및"을 "하사 이하인 군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만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30인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법 제67조 규정"을 "법 제67조"로 한다.

4.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40퍼센트 할인"을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 장기"를 "제외)"로, "50퍼센트 할인"을 "50퍼센트"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입장시간 및 사용시간 등)"을 "(이용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관광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제10조의 제목 "(시설사용료 감면)"을 "(시설사용료 감경)"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0 감경"을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100분의 30 감경"을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 0분의 50을"을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을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면제받고자"를 "감경받고자"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 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관광지 내의 산림경영, 문화행사 등 기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숲해설, 산림문화행사"를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축제"로, "행정업무 추진"을 "공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0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 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관광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자 본인이어야 하며 관광지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

  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하되 해당 관광지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다문화동"을 "숙박시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예약금 및 이용신청)"을 "(이용신청 및

결제)"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1항제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을 "해당"으로, "퇴장"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제 등"을 "방제,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를 "관광지 관리·운영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로 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 병환자

제18조(종전의 제16조)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 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 1. 야영장

시설명	규격	기준	사용료	비고
야영텐트	_	1일*1개소	20,000원	
야영데크	3.5m×4.5m	1일*1개소	30,000원	전기료 포함
오토캠핑장 청소년야영장	5m×8m	1일*1개소	30,000원	전기료 포함
캠팽카야영장	6m×12m	1일*1개소	35,000원	전기료 포함

### 2. 기타시설

시설명	규격	기준	사용료	비고
평상	3.5m×4.5m	1일*1개소	20,000원	

### 3. 숙박시설

시설명	규모	기준	사용료	비고
다문화동	36m²(6인실)	1일*1실	100,000원	중국,일본,베트남, 필리핀,몽골(58㎡)
가족휴양동	30.24㎡(5인실) 48.98㎡(6인실) 54.40㎡(8인실) 69.44㎡(12인실)	1일*1실	70,000원 110,000원 150,000원 160,000원	
회의실	-	1시간당	30,000원	

### 4. 주차료

구분	규격	기준	사용료	비고
주차료	15인승 이하	1일*1대	3,000원	
十八五	16인승 이상	1일*1대	10,000원	

### 5. 기타사항

- 1일 미만 사용시라도 1일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 흥법 1 제67조의(이하 "법"이라 흥법 \_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이하 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관광지"라 한다)의 보호관리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위치) 관광지의 위치는 장 제2조(위치) 방화동 가족휴가촌 수군 번암면 사암리 고시된 지 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 역으로 한다. 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 제3조(적용범위) -----리 및 이용에 관하여 법 또는 ----- 「관광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67조 또는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4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이상 만12세이하인 자를 7세 이상 13세 미만-----말한다. 2. 청 소 년 : 만13세이상 만19 2. ----- 13세 이상 19세 -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3. 군 인 : <u>하사이</u>하인 군인과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을 말한 다.
- 미만인 자로서 하사이하의 군 인과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을 제외한다.
- 말한다.
- 6.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 6. ---- 30인 이상-----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을 말한다.
- 7. 삭 제
- 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 하다.
- 9. 10. (생략)
- 략)
  - ②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관광 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1.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 설ㆍ사항 제외): 40퍼센트 할

3.	 <u>-</u> 하시	이하인	군인과
-	 		
_			

- 4. 어 른 : 만19세이상 만65세 | 4.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인 자를 말한다.
- 5. 노 인 : 만65세이상인 자를 | 5. ----- 65세 이상-----
- 8. 시설사용료 : 법 제67조 규정 8. ----- 법 제67조----
  - 9. 10. (현행과 같음)
-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생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현 행과 같음)
  - (2) -----
  - 1. --------- 40퍼센트

인

2. 3일 이상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 · 사항 제외) 장기 사용할 때 : 50퍼센트 할인 ③ • ④ (생 략)

등) 관광지입장시간과 별표 1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 2:00까지
- 2. 사용시간

가. 숙박시설 : 당일 14:00부 터 다음날 11:00까지

나. 야영장 및 기타시설・사 항 :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

<u><신</u> 설>

----- 제외) -----

----- 50퍼센트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입장시간 및 사용시간 제8조의3(이용시간 등) ① 관광지 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 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u>호의 구분에</u> 따른다.
-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삭 제10조(시설사용료 감경)

제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	공공시
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	스레」
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디	바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를 다
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b>-</b> .

-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 ③ 「장수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④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u>면제받고자</u>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제10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②
,
1
50퍼센트
2
<u>30</u> 퍼
<u>센트</u>
③
50퍼센트
4
<u>30</u> <u>30</u> <u>5</u>
⑤ <u>감경받고자</u>
<u>посът</u>

#### 시설물 운영) <신 설>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유관 4.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기관과의 협조 등 관광지 내 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 설사용대장(별지 제2호서식) 등 을 통해 관리한다.

<신 설>

① 군수는 관광지 내의 산림경 영, 문화행사 등 기타 행정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축제-----

-- 공무수행-----

5. 관광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 우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물의 지정・운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 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u>하여야 한다.</u>

제11조(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의

<신 설>

다문화동, 야영장 등을 이용하 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이 나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리자에 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2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자는 제13조(위약금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

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 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 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 해제
-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1조(예약금 및 이용신청) ① 제12조(이용신청 및 결제) ① 숙 박시설-----

②・③ (현행과 같음)

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

기본법 1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1. • 2. (생략)

3. 제14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 3. 제15조-----되는 경우

② (생 략)

제13조 (생략)

제14조(이용자의 행위 제한 및 퇴 제15조(이용자의 행위 제한 및 퇴 장) ① 관광지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 하거나 관광지 현장책임자의 지 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 장을 시킬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략)

② 관광지 관리・운영자는 산불 방지 • 산림병해충 방제 등 관광 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장) ① -----

----- 해당 \_\_\_\_\_ 입

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 1. ~ 7. (현행과 같음)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 9. (현행 제8호와 같음)

2 ---------- 방제,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 · 운영자 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미리 알리고 관광지 입구에 이 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 다.

<신 설>

----- 관광지 관리·운영자는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관광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관 광지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예약자의 직계 존 · 비속, 배우 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 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 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관 광지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 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 다.

제15조 (생략) 제16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 제1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광지 관리·운영자는 <u>제14조</u> 규
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 이용
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
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u>제15</u> 조 손해
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에 게시하여
야 한다.

<u>제17조</u> ~ <u>제20조</u> (생 략)

<u>제15조</u>
<u>제17조</u>
<u>.</u>
740- 700- / 51-71 74 1

<u>제19</u>조 ~ <u>제22</u>조 (현행 제17조부 터 제20조까지와 같음)

#### 1. 개정이유

○ 이용시간 조정, 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약제외시설물 명시 및 관리자 예약 내부 통제 방안 마련으로 관광지 운영의 투명성을 고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규정 반영 (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일반시설물 이용시간, 숙박시설, 야영시설 입실·퇴실시간 조정 (제8조의3제1항, 제2항)
  - 이용시간 08:00부터 22:00 ⇒ 09:00부터 18:00
  - 숙박시설. 야영시설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숙박시설, 야영시설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으로 제목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사유 규정 (제10조의2제1항, 2항)
- 관리자 예약 사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 방안 마련 (제11조)
- 이용자 행위 제한 및 퇴장 사유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추가 규정 (제15조제1항제8호)
- 관광지 이용에 따른 매매·교화 등 금지 조항 신설 (제16조)
-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객실 인원수 조정, 주차장 사용료 신설 (별표 1)
- 기타사항
  - 띄어쓰기 수정, 할인율, 감면율 단위 통일

장수군 조례 제2676호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로 한다.

제2조 중 "휴양림 중"을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중"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초등학생 또는 만7세이상 만13세미만"을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

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만13세이상 만19세"를 "13세 이상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순경·방위병을 포함한다)"을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19세이상 만65세미만"을 "19세 이상 65세 미만"으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3 0인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21조의2"를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를

제4조제2항제1호 중 "40퍼센트 할인"을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퍼센트 할인"을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입장시간 등)"을 "(이용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사용료"를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50퍼센트 할인"을 "50퍼센

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퍼센트 할인"을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퍼센트 할인"을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 중 "30퍼센트 할인"을 각각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 감경"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감경"을 "30퍼센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예약금 및 이용 신청)"을 "(이용 신청 및 결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제"를 "방제, 홍수, 태풍"으로 한다.

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 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제15조의2의 제목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예약제외시설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숲해설, 산림문화행사"를 "자연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축제"로, "자연휴양림 내에 서 행정업무 추진"을 "공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5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 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7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준·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 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 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 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2항의 기호(-) 중 "숙박시설(별표 2. 편의시설 제외)"을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기호(-) 중 "숙박시설(별표 2. 편의시설 제외) 장기"를 "숙박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숙박 및 기타 시설물 사용자, 장수군민의 경우 썰매장 및 수영장은 무료이용 적용, 단, 이용시간 이후 제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u>시설사용료(제4조 관련)</u>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야 영 장	야영텐트(4인)	1일*1개소	20,000				
	야영데크	7m×5m(6인)	1일*1개소	35,000				
편의	평상	3m×3m(4인)	1일*1개소	20,000	V) =			
시설	캠핑카야영장	5m×5m(4인)	1일*1개소	20,000	와룡			
	썰매장 · 수영장	어른, 청소년, 군인	1일*1회	6,000				
	1 0 0	어린이	1 5 1 7	4,000				
		층 별	1일*1층	400,000				
	연수의집	회의실	1시간당	30,000				
		식 당	1시간당	30,000	_			
	복합산막	42.9㎡(6인실)	1일*1실	80,000	와룡			
	산 막	29.7㎡(4인실)	1일*1실	60,000				
숙박 시설	부엉이・소쩍새	66㎡(10인실)	1일*1실	180,000				
		59.5㎡(8인실)	1일*1실	150,000	방화동			
	숲속의집	70.38㎡(10인실)	1일*1실	200,000	와룡			
		39.33㎡(4인실)	1일*1실	70,000	45			
		39.6㎡(6인실)	1일*1실	80,000	방화동			
		50㎡(6인실)	1일*1실	90,000	와룡			
	산림문화휴양관	52.8㎡(8인실)	1일*1실	100,000	방화동			
		59.5㎡(8인실)	1일*1실	150,000	와룡			
		회의실(방화동)	1시간당	30,000	방화동			
	산림문화관	식 당	1시간당	30,000	방화동			
	한옥체험동	48.93㎡(14인실)	1일*1동	240,000	와룡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	제1조(목적)
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u>자연</u>	<u>자연</u>
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	<u>휴양림의 관리·운영과 「산림</u>
<u>다)의 관리·운영과 「산림문화</u>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
• 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	<u>조의5</u>
5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	
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수군내에 조성	제2조(적용범위)
된 <u>휴양림 중</u> 장수군수(이하"군	<u>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u>
수"라 한다)가 조성한 휴양림에	<u>라 한다) 중</u>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3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 와	<u>각호</u>
같다.	
1. 어린이 : <u>초등학생 또는 만7</u>	1 <u>초등학교 학생과 7세</u>
<u>세이상 만13세미만</u> 인 자를 말	이상 13세 미만
한다.	
2. 청소년 : <u>만13세이상 만19세</u>	2 <u>13세 이상 19세</u>

미만인	자를	말한다.

-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 3. ----- 하사 이하 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어른 : 만19세이상 만65세미 만인 자를 말한다.
- 5.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 5. -----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 상인 자를 말한다.
-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7. 삭 제
- 8.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 8. ----- 「산림문화・휴 양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5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9. ~ 13. (생략)
- 14.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 14. ----- 「국가보 훈 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 람을 말한다.

②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

_	_	_	_	_	_	_	_	_	_	_	_	_	
													•

- 의 군인과 의무경찰-----
- 4. ---- <u>1</u>9세 이상 65세 미만--\_\_\_\_\_\_
  - ----- 65세 ----------.
- 6. ---- 30인 이상-----
  - 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_\_\_\_\_
  - 9. ~ 13. (현행과 같음)
  - 훈 기본법」 제21조의2---------.
- 제4조(시설사용료) ① (생 략) 제4조(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 음)
  - (2) -----

제511호

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 1.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4 1. ----- 40 0퍼센트 할인
- 2. 3일 이상 숙박시설(편의시설 2. -----제외) : 50퍼센트 할인
- ③ ~ ⑤ (생 략)

장시간과 별표 1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 2:00까지
-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다 음날 11:00까지
- 3. 편의시설 중 야영장, 야영데 크, 평상, 캠핑카 : 당일 14:00 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 설>

- 퍼센트

---- 50퍼센트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입장시간 등) 휴양림입 제4조의3(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 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 ----- 성수기 및 주말 면할 수 있다. 이외에 시설사용료-----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 는 숙박시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フト. -----인 : 50퍼센트 할인 -- 50퍼센트 나.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 : 30퍼센트 할인 ----- 30퍼센트 2.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30퍼센트 할인 ----- 50퍼센트 3. ~ 21. 삭 제 22. 「장수군 장기등・인체조직 22.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자: 30퍼센트 ----- 30퍼센트 할인 23.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 23. -----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 <u>30퍼센트</u> 명문가 : 30퍼센트 할인 ②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 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 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

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

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감경

③ • ④ (생 략)

제8조<u>(예약금 및 이용 신청)</u> ① ~ 저 ③ (생 략)

- 제13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 조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행위제한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7. 「동물보호법」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동물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 는 경우

8. • 9. (생략)

② 관리자는 산불방지, 산림병 충해 <u>방제</u> 그 밖에 장수군 자연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1	
<u>50퍼센트</u>	
2 30퍼	-
<u>센트</u>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 <u>(이용 신청 및 결제)</u>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	
장) ①	=

- 1. ~ 6. (현행과 같음)
- 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 는 행위는 제외한다.
- 8.•9. (현행과 같음)
- ② -------- 방제, 홍수, 태풍 -----

\_\_\_\_\_

보

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시설물 운영) <신 설>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 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 다.

<신 설>

- 제15조의2(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제15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 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축제---------- 공무수행--
  -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 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물의 지정・운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 <신 설>

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의 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절차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7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

<신 설>

	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
	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
	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
	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
	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
	<u>다.</u>
<u>제16조</u> (생 략)	<u>제18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 1. 개정이유

○ 이용시간 조정, 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약제외시설물 명시 및 관리자 예약 내부 통제 방안 마련으로 관광지 운영의 투명성을 고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규정 반영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일반시설물 이용시간, 숙박시설, 야영시설 입실·퇴실시간 조정 (제4조의3)
  - 이용시간 08:00부터 22:00 ⇒ 09:00부터 18:00
  - 숙박시설, 야영시설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 숙박시설, 야영시설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 국가보훈대상자 숙박시설 감면률(30퍼센트 ⇒ 50퍼센트) 조정 (제7조제1항제2호)
- 반려동물 입장 금지에 따른 이용자의 행위제한 운영기준 개정 (제13조제1항제7호)
-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으로 제목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사유 조정 (제15조의2)
- 관리자 예약 사항을 신설하여 내부 통제방안 마련 (제16조)
- 자연휴양림 이용에 따른 매매·교환 등 금지 조항 신설 (제17조)
- 야영장 및 식당 등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객실 인원수 조성 (별표 1)
- 기타사항
  - 띄어쓰기 수정, 할인율, 감면율 단위 통일

장수군 조례 제2677호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활동을 통합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지식정보를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2. "자매결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지방자치

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농업, 교육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 3. "우호교류"란 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써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선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 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 여야 한다.
  -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
  -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 5. 역사 ·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할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 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과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각 종 정보 교환과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③ 자매결연 등의 추진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읍·면의 자매결연 등) ① 읍·면장이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 ② 군수는 읍·면장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

- 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 2.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 · 외 활동
- 3.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 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 4. 국내 · 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 5.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활동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이 제10조에 따른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이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매결연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 2.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부진과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과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 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1. 제정이유

○ 장수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
- 사전검토 및 교류, 의회동의에 관한 사항 (제5조 ~ 제7조)
-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 (제8조 ~ 제9조)
-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 ~ 제11조)
- 자매결연 등 취소 및 사후관리 (제12조 ~ 제13조)

장수군 조례 제2678호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하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장수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생 활단위를 말한다.
-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리, 청소, 세탁, 가족돌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장수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군민 참여 등) 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군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군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가사로 인한 정신적 · 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 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수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실태조사 (제4조~제5조)
- 군민의 참여 및 지원사업 (제6조~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포상 (제8조~제9조)

장수군 조례 제2679호

#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농업, 임업, 어업 상의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농업, 임업상"을 "인명이나 농작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 호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대상)"을 "(피해보상 대상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군민(이하 "농업인등"으로 한다)으로서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입산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군수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과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피해 면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가의 피해농지"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가는"을 "농업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피해농가"를 "피해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농가"를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피해액 산정)"을 "(피해액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액의 산정은"을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작물 소득"을 "농작물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의 제목 "(피해보상)"을 "(피해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보상액은"을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작물별"을 "농작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신체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9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중 "농업인"을 "농업인등"으로, "농작물"을 "농작물등"으로 하며, 같은항 후단 중 "농업인"을 "농업인등"으로, "농업인별"을 "농업인등 개별"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인"을 각각 "농업인등"으로하며, 같은항 제6호 중 "농가가"를 "농업인등이"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시설로서"를 "시설로써"로 한다.

제10조 중 "동물로써"를 "야생동물로서"로 한다.

제11조 중 "유해 야생동물"을 "야생동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u>조례</u>	장수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농업, 임업, 어업상의 피해예방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 야생동물"이란「야생생	제2조(정의)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         다.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 <u>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u> 는 작물을 말한다. <u>&lt;신 설&gt;</u>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 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 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

- 3.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4.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5.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세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 하다

<신 설>

<신 설>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 상대상) ①야생동물에 의한 피 소재 농경지의 농작물로 한다.

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 호 및 제13호 해당하는 농작 물,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 인명이나 농작물등-----
- ---- 등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사람을 -
-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등 「임업 및 산촌 진 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 7. "어업인"이란 수산동 · 식물 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 해보상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 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 두고 거주하는 농가 및 장수군 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 업인, 임업인, 어업인, 군민(이

②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지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하 "농업인등"으로 한다)으로서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 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입산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 를 받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 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 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군수에게 포획조 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
-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 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 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 설>

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가의 제4조(피해 면적기준) 야생동물에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 또는 읍 • 면장에게 즉시 신고하 여야 하다.

② (생 략)

③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또 는 반장, 피해농가 입회하에 군 수 또는 읍 · 면장이 정밀조사

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 은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 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 우
-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를 입은 농작물등과 농업인등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의한 피해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①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① 농업인등은 -----

② (현행과 같음)

---- <u>피해 농업인등</u> -----

한다. 이때 피해 입증 책임은 <u>농</u> <u>가</u>에게 있다.

제7조(피해액 산정) 피해액의 산 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 하여 산출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와 <u>작물 소득</u> 자료 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현 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8조<u>(피해보상)</u> ①<u>피해보상액은</u>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u>작물별</u>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임 차 농지인의 경우에는 실경작자

	<u>공</u>
<u>업인등</u>	

제7조 <u>(피애액 간정기군)</u> <u>① 피애</u>
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
· 누키므 Հ드
<u>농작물 소득</u>

-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 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 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 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 으로 산정한다.

제8조 <u>(피해보상금)</u> ①	<u>농작물등의</u>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

(2)	_
<u>농작물등의</u>	_
	_

에게 지급한다.

<u><신 설></u>

제9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9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이 야생동 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 농업인 자부담 40%를 원칙으로 하고, 농업인별로 지원하는 최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예 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③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신체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

제9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9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u>농업인등</u>	
<u>농작물등</u>	
	<u>농업</u>

<u>인등</u>	
<u>농업인등 개별</u>	

2	 	 	 

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1
사실이 없는 <u>농업인</u> 의 경작지	<u>농업인등</u>
역	
2.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
있는 <u>농업인</u> 의 경작지역	<u>농업인등</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6
다수의 <u>농가가</u> 야생동물로 인	<u>농업인등이</u>
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	
역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③
수 있는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3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u>시설로서</u> 군수가 인정한	<u>시설로써</u>
시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네10조(구제보상 사업) 유해야생	제10조(구제보상 사업)
동물 구제 보상은 장수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u>동물로써</u>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 야생동물

로서 -----

까치·고라니·멧돼지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있다.

제11조(보상단가) <u>유해 야생동물</u> 보상단가는 별표 야생동물 보상 기준에 의한다.

제	11조(보상단	<u></u> 가)	야생.	동물	
					 _

#### 1. 개정이유

○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대상과 보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에 알맞은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중 대상 확대 규정 (제1조)
  -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 규정
- 인명피해에 대한 사항 상세 규정 (제8조)

장수군 조례 제2680호

###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장수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

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

균

-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① 의용소방대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장수군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제6조)

장수군 규칙 제1210호

##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을 "임상연구비"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장수군수로부터 임용 또는 채용된 의사"를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장수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로 한다.

별표 1의 원장의 지급한도액란 중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군

#### 혅 했 개 정 아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보 제1조(목적) -----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 ----- 임상연구비 -----려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1항 제2조(지급대상) ---------- 장수군 보건의료원 에서 정하는 대상자는 보건의료 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장수군수 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로부터 임용 또는 채용된 의사 제외)란 장수군수로부터 임용된 를 말한다. 의사---. [별표 1] [별표 1]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1과제당) (제4조관련)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액(1과제당) (제4조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대 상 지 급 한 도 액 지 급 한 도 액 500만원 이하 원 장 400만원 이하 원 장

#### 1. 개정이유

○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료인력(의사) 임상연구비를 현실화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수준 향상

#### 2. 주요내용

- 제명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 변경
- 제1조 중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을 "임상연구비"로 변경
- 제2조 중 "대상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장수군수로부터 임용 또는 채용된 의사"를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 보건의사 제외)란 장수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로 변경
- 제4조 별표 1의 임상연구비 지급한도 변경(현행) 1과제 당 400만원 ⇒ (개정) 1과제 당 500만원

장수군 규칙 제1211호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2023년 6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55세"를 "55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20조(근무상한연령) ①
1 <u>60세</u>
2 <u>55州</u>
3 <u>40세</u>
②・③ (현행과 같음)

#### 1.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는 만 나이 통일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표시 삭제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장수군 공고 제2023-723호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있는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 업의 지원 근거를 체계화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정의하는 규정을 일부 수정(안 제2조)

- 자체수매차액(제7호). 전략품목(제9호)

- 나.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함(안 제4조)
- 차액지원사업과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분리다. 지원대상 및 면적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함(안 제6조)
  - 차액지원사업의 면적은 품목당으로 하고,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 사업의 면적을 확대함
- 라. 사업참여를 위한 신청서류 일부 보완(안 제14조)
- 마. 부칙 반영
  - 2022년 재배한 벼의 경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

#### 3. 금후 계획

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제출 등 : 2023. 6월

####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전화) 063-350-1712, FAX: 063-353-3371

(전자우편) gongmu88@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 4.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담당자(전화 : 063-350-17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	법구	7 명	:
------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사시됩니인 대공	찬성	반대	=	건 	H 17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7호 중 ""자체 수매 차액""을 ""농협 자체 수매 차액""으로, "매입 1등급"을 "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지원과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벼 자체수매 차액의 지원(이하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이라 한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조제3호에 따른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 대상은 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농가당"을 "품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3만 제곱미터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판매현황) 및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를 "판매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계통출하조직: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 벼 수매입고 전표, 출하내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3호 지원 사업은 2022년 재배한 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자체 수매 차액"</u> 이란 공공비	7. <u>"농협 자체 수매 차액"</u>
축미곡 <u>매입 1등급</u> 가격에서	매입
"농협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	
액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9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	
품목으로 <u>규칙으로 정하는 것</u>	<u>위원회에서 정한 품</u>
을 말한다.	<u>복</u>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4조(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군	제4조(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	
다)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산물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2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지워과 벼 자체수매	지워

<u>차액 지원</u>(이하 "차액지원"이 라 한다) <신 설>

3. ~ 7. (생략)

제5조(대상 농산물)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농산물은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하며, 각 지원 구분별 지원대상 농산물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_설>

<u>3</u>. (생 략)

제6조(지원대상) ① (생 략)

② 차액지원은 <u>1농가당</u> 농산물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 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한 다.

<신 설>

3. 벼 자체수매 차액의 지원(이
하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
이라 한다)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제5조(대상 농산물)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3호에 따른 농협 자
체수매 차액지원 대상은 벼로
<u>한다.</u>
<u>4</u> .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품목당

③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은 1

③ • ④ (생 략)

제14조(사업 참여 및 지원 신청) 제14조(사업 참여 및 지원 신청) ①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 하려는 계통출하조직 또는 가격 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한 신청서를 관할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1. 농업인: 계통출하 증명서류 (품목별 계약체결 내용, 출하 실적, 유통업체별 판매현황) 및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
- 2. 계통출하조직: 사업계획서

② ~ ⑤ (생 략)

농가당 농산물 생산면적 1천 제 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 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①	
1	

----- \_판매현황)

2. 계통출하조직: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 벼 수매입고 전표, 출

② ~ ⑤ (현행과 같음)

하내역서

장수군 공고 제2023-724호

##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 장 수 군 수

#### 1. 폐지이유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022.12.26.) 되어 본 규칙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3. 금후 계획

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제출 등 : 2023. 6월

####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전화) 063-350-1712, FAX : 063-353-3371

(전자우편) gongmu8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담당자(전화: 063-350-17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붙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나. 장수군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口ス	ㅏ치	법	규	명	:
----	----	---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자시합규인 대통	찬성	반대	<u> </u>	건	n) 17

장수군 규칙 제 호

##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23-737호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 장 수 군 수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종합적·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능

: 안 제1조~제5조

- 조례 제정 목적 및 운영원칙,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안 제6조~제16조

-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및 위촉 방법, 구성원, 분과위원회, 주 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 안 제17조~제21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대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안 제17조~제23조의2

-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업무수행 협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보 칙

: 안 제24조~제26조

-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보험, 그 밖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063-350-2139, 팩스: 063-350-5705, 이메일: abcice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담당자(☎063-350-2139)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시시됩니던 데딩	찬성	반대	7	<del>ا</del> ل	H T

장수군조례 제 호

### 장수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주민"이란 읍 면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의 구성원을 말한다.
- 4.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

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읍 면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4조(설치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 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ㅇㅇ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 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2. 장수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 4.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5.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 원회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

람(다만,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 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8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 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읍·면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장이 위촉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1. 읍·면장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 2. 관내 학교·기관 및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 3명 이내
-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결정
-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 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 5.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 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 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 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 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읍 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 3. 읍 · 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 4. 읍 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

최하는 날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그 밖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나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 3. 읍 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 5. 분과별 사업 계획
  - 6. 읍 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그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 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9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제7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특별법」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임한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 면 단위 주민

참여예산기구,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의2(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5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 •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

-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장수 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읍·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공고 제2023-739호

##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8일

###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연구용역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에 대한 공개 확대를 통해 연구용역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연구용역 공개 규정 강화(안 제16조제1항)
- 용역 종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
- 나.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6조제2항)

-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부분공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제시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전화: 063-350-2049, 팩스: 063-350-5702, 이메일: seul280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예산팀 담당자(☎063-350-2049)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붙 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 나. 장수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	법	규	명	:
--	----	---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찬 반 여 부 의 견		찬 반 여 부		비고
시시합마한 대중	찬성	반대	7	건 	비고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용역결과
- 2. 용역 평가결과
- 3. 용역 활용상황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6조(공개) <u>과제담당관은 용역</u>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 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제16조(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연 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 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야 한다.

- 1. 용역결과
- 2. 용역 평가결과
- 3. 용역 활용상황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관계 법 령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 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장수군 공고 제2023-748호

##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3공구)』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6월 12일 장 수 군 수

- 1. 사업시행자 : 장수군수
- 2.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3공구)

나, 공사구간 : (시점)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359 ~ (종점)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560-1

다.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예정)

라. 보상내역 : 따로붙임

3.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063-350-2581)

4. 열람기간 : **공고문 게재일로부터 15일** 

5. 보상시기 : 2023년 6월 이후 보상 예정(협의 방법은 추후 개별 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용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소유자별로 각각 협의 요청함.

#### 제511호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

다.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		소유자		서명	전화번호	평가업자
모시도세시	지번	면적(m²)	주소	성명	(날인)	(자택및휴대폰)	정기표자

- ※ 대리인 서명(날인)은 불가하며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 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는 는 는 는 는																102	0. 0.		
	i								101	נע	JL	JL	JL	JL	JL						LIV
ਹ	<u>.</u>	五0 五0							₩ *	<u>*</u>	~ *	· **	· **	* *	· **						力 * *
전 6 연 연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u>1</u> 5	K⊦ ≺ł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2길 71, 가동 20*호 (송천동1가,동북아파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갈평길 80-2*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길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308*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308*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308*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308*						전라북도 장수군 게남면 중방2길 2*(양*탁 총무)
Υ΄ Δ΄ Δ΄	3	赵 昭		必 小 山	아 나 나	야 나 민	장수군	야 사		· ** **		남*양씨경암공파	남*양씨경암공파	나*양씨경암공파	남*양씨경암공파	장수 다	국(농림축산식품부)	장수군	장수군	국(농림축산식품부)	U├ ** *00
区 市	00 -	K⊦							ר אל ר חויים	성다ポ도 성수군 세명단화음리 97*		라북도 장수군 계남 화음리 966-*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66-*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66-*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966-*	1	-	_	-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69*
리 전 리 전 리 전	지	(m³)	48,005	191	1,687	1,048	34	1,137		2,108		251	145	248	927	26	5	14	99	19	318
云 1 1 1 1 1 1 1	ŘΓ	(m²)	221,367	25,148	5,285	1,535	331	1,247		4,430		830	145	248	3,448	66	68	21	110	26	13,892
		<del>-</del> π		多多可以	KY	KJ	لاث	ال		凶		9 9	90 90	9 G	90 B	대기	구거	누거	多多	다 사	90 09
	r.	파		2		ო	-			4		19	20	21	22	ო	2	2	4	ß	-
]	되	別 到	66	937	942	942	944	955		959		959	959	959	959	1454	1455	1535	1536	1536	7
<b>宏</b> <u>EN 2 M N</u>	ī	บ		전 다 고	A 라 디	정기기	침과리	전 나 디		설 다 의		참기	참기	전 나 디	전 나 디	전 나 디	침곡리	침곡리	침구리	전 다 디	향양
퍼 K	) (I) (H)	) j B)	· 왕 경	는 다 자	게라면	되 한 뜻	게라면	피 아 카		등 한 등		는 다 기	는 다 기	는 다 의	는 의 가다	면 한 커	게다면	게마	게다면	는 다 된	五四四四
# 요 -	[	기 년	iKfO -	な 小 山	상사	상 나 미	장수면	상유		以 小 山		상 나 미	상	상 나 디	상 나 디	상사	장수군	장수记	장 수 고	以 小 山	상 나 디
	<b>₽</b> J ₹	5J	•	-	7	က	4	S		9		7	ω	თ	10	=======================================	12	13	4	15	16

الانات						ᆫ				工					Z0, C	· ·	2. (1
	∜ * *0	ب ب رخ	か た に た	* *	* *	상 * *0				至0 * 0円	赵 外	* *	12*10	N (N (N (N (N (N (N (N (N (N (N (N (N (N	₩ *	0 * d	0 * 本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일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중방2길 2*(양*탁 총무)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중방2길 2*(양*탁 총무)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길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길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길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60-*	전라북도 장수군 게남면 난평길 60-*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길 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안길 17-*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54* 대표 최*주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3, 1213동 10*호 (철산동,주공아파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1길 3*, 2층 (면목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1길 3*, 2층 (면목동)
	√⊦ * ö0	₩ *%	1000 * * * * 0	응 * *	응 * *	⊹ **	장수군	장수고	상 나 다	찬0 * 아니	첫 아	등 * *	1/*10	마 * %0		<u>*</u> 장	
	전라북도 점음시 신태인음 신태인리 43-1 한진신세대아파트 103-50*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69*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97*	전라북도 정읍시 선태인읍 신태인리 43-1 한진신세대아마트 103-50*	전라북도 정읍시 선태인읍 신태인리 43-1 한진신세대아마트 103-50*	전라북도 정읍시 선태인읍 신태인리 43-1 한진신세대아파트 103-50*	_	-	I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32-*	전라북도 장수군 게남면 화양리 432-*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43-1 한진신세대아마트 103-50*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3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47-2*	1	선라북도 장수군 계당면 화양리 2*	
	1,458	89	10	1,857	394	180	1,018	367	287	263	70	70	620	357		780	
	18,510	248	10	4,074	394	304	1,127	367	287	554	158	133	820	357		1,269	
	#0 IS	80	80	凶	图	90 90	버	버	버	赵	K)	Kì	KJ	K)		ĸJ	
	4	2	9	2	80	თ	10	11	12	17	18	19				-	
	2	7	7	2	2	7	7	7	7		7		ω	6		10	
	호 등 등	향양	후	호양의	후양기	호 등 등	화양리	화양리	형	향양	화양기	(전 (전 (건 (건	호양의	등 등 등		<u>형</u> 양	
	년 야 河	면 야 공	는 다 문	게다	면 게 가	년 기 기	계나면	게다면	는 다 교	되 한 등	되 한 등	면 야 স	게 다 대	년 (년 전		비 한 天	
	以 小 山	상 나 대	장 유	상 수 디	상 사 디	校 小 山	장수고	상수	상 사 대	상 사 대	상 나 다	47 小 円	장 수 대	상 사 대		상 사 대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59	30		93	

						ᆫ				T.						102	40	. 0	. те	·. ( ·
80 * 0	0*셔	2, 4		장 *	101 * 01:	* *		20 20	。 * *	至0 外	김*태				非 *A			₩ *±	※ 품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3, 1213동 10*호 (철사동, 작고아마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1길 3*. 2층 (면목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27번길 *, 1층 (양지동)	화양리 10-1, 10-2와 동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1길 6-* (금암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10-34, 10*호 1층 (문정동,청화빌라)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고금길 4*	화양리 51번지와 동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2길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29, B동 70*호 (중화동,강오아파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60-*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문화로 27, 20*호 (청송빌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고정길 8-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고양로 467-3*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고양로 467-3*	
	<u>*</u>		0 *	전 * 전	학 * 지		야 *진	고 고	<u>유</u>	소0 아	의*ti	장 나 고	장 나 다	상 사 旧	바 * 기	되 한 天	되 카 카	w *=	※*#	장수군
	선다뿍도 상수군 계담면 화양리 2*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2*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7*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 고 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3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026-*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36*	17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문화로 27 20*호 (청송빌라)	1	1	ı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고정길 8-1*	ı	ı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22*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22*	-
	99		526	628	584		230	373	614	1,055	454	300	7.1	1,663	419	256	44	95	113	18
	99		526	2,803	683		583	681	889	1,950	2,530	300	209	17,298	9,527	345	179	132	850	56
	<u>k</u> j		K)	لاث	₹J		K)	Kì	到	K)	图	버	버	80	80	Kì	KI	K)	죄	버
	7		ო	-			-					-	ო	-	2	2	9	6	31	ო
	10		10	=	15		51	52	53	55	56	56	28	225	225	225	225	225	225	230
	(전 (전 (건		향양	(S) (S) (S)	년 66 10		(S) (S) (S)	향양	항양기	(S) (S) (S)	화양기	화양기	화양되	후양	등 등 등	학양의	화양기	향양	화양기	화양리
	四。元		四元元	면 c 元	년 야 구		면 c 元	는 라 라	는 다 되	면 c 元	는 라 라 라	면 야 공	면 야 공한	는 다 등	면 야 天	게마면	게라면	면 한 제	면 한 天	계하면
	상 사 대		상 나 대	상 나 미	以 小 山		상 나 미	상 나 다	校 小 山	상 나 미	상수고	分子	分子	分子	상 나 대	상사	장수민	상사	상수면	장수记
	32		33	34	35		36	37	38	39	40	14	42	43	44	45	46	47	48	49

 					יי													۶. (۱	
	조 *스	<u>싸</u> 소	조 사	計 * い	↓ * KP		김*수	<u>₩</u>		数 * 더	松 *		바*ੜ	· 하 * #i	w *=	파 * 애	岭 * 四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골5길 15, 80*호 (우아동3가,효성임대아파트)	전라북도 전추시 덕진구 안골5길 15, 80*호 (우아동3가,효성임대아파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골5길 15, 80*호 (우아동3가,효성임대아파트)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북동로 61-6, 103동 20*호 (장계 에코르)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일 9*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75-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2길 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20, 40*호 4층 (효자동3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 20, 40×호 4층 (효자동3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47-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47-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고양로 467-3*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북동로 61-6, 103동 20*호 (장계 에코르)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2길 3*		
상 사 다	짜 *수	짜 * 간	장 *수	사 이	Ķ0 * KH	국(산림청)	김*수	<del>※</del> W	장수군	첫0 * K기	전 *	장수군	바*#	바*#	w *=	* 아	한*금 외 2인	국(환경부)	
ı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유천길 48-*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유천길 48-*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유천길 48-*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남산길 107-*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요전길 90-*	1	心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0*	I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하거마5일 3*(삼천동1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1일 20 4층 40*호(효자동3가)	ı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47-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47-1*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9*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남산길 107-*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2길 3*	1	
232	137	1,262	1,408	574	402	482	257	14	9	398	115	73	458	492	09	106	2,227	39	
307	1,134	2,789	5,755	2,719	2,298	2,374	793	63	20	740	192	73	1,398	1,031	09	106	6,238	536	
버	赵	函	의 06	על	لاث	80 08	KŊ	버	러	到	لاث	버	لاث	لاث	赵	על	90 GB	노	
15	32	54	55					-	- -			-							
231	231	231	231	303	305	359	360	360	375	376	377	377	380	381	382	383	384	1009	
항양	화양리	를 등 등	화양리	현 60 디	후양기	화양기	화양리	화양기	화양리	행 등 기	후양기	화양기	호양	화양리	호양	<u>형</u> 인	화양리	향하	
등	게마면	는 의 의	게다면	되 라 카		는 의 의	계당면	교 대 대	게다면	는 의	는 의 라	게다	게 다 면	게당면	제하	는 의 기	계남면	는 되 는 는	
(A) 小 山	상 나 다	校 小 口	상 나 다	校 小 山	(첫 사 대	상 나 다	장수군	상 나 다	장수记	以 小 山	47 小	장수면	장 나 다	장수군	장 나 다	校 小 口	장수군	상 나 디	
20	51	52	53	54	55	56	57	58	59	09	19	62	63	64	65	99	67	89	

الاران							ı.			,	工				202	20. 0.	10	. (¬.
									*     	w * 0	(A) (A) (A)	w *=	₩ *0	중0 * (10	다 *	01*선	₹ %	조0 사 아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2일 21-4, 10*호 (스마트빌라)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2길 21-4, 10*호 (스마트빌라)	경기도 광주시 경총대로1422번길 25, 105동 120*호 (쌍영동,동성1차아파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고양로 467-3*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72번길 17, 20*호 (검암동,휘닉스파크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9가길 5, 10*호 (금호동2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천중앙로 11, 103동 20*호 (효자동2가,전주효천우미린더 퍼스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60-*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길 6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전라북도	국(농림축산식품부)	<u>卡*</u>  0	₩*10	₩*10	#*중	O*0	40 사	· * 전	D*I0	소 아	첫0 * 아니
	1	-	-	_	_	_	-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중방1길 8-*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중방1길 8-*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337 동성1차아파트 105-120*	전라북도 장수군 게남면 화양리 49*	전라북도 장수군 게남면 화양리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97 40*호 (선월동)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2 상산타운 107-60*	전라북도 장수군 게남면 화양리 432-*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32-*
	151	157	763	132	661	249	162	350	569	489	313	369	358	301	594	512	384	654
	299	641	763	295	992	2,585	1,027	3,378	3,549	3,019	2,517	2,219	2,173	1,993	2,208	1,441	1,086	2,293
	노	누거	나	누거	버	버	하전	누거	נל	ال	لاث	נל	لاث	لآن	لاث	لاث	נל	لاث
	8	14	15	16			1											
	1012	1015	1015	1015	1016	1031	1066	1103	1409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화양리	화양리	를 음 음	화양리	화양리	화양리	후양디	화양리	등 등 기	(전 (전 (건	는 하 다	항양기	學	를 양 디	화양기	양양	항양기	화양기
	계양면	계남면	는 다 되	계남면	게다면	게다면	게하	게라면	는 다 대	는 다 대	는 다 자	필마	게마	<u>부</u> 마 미	게하면	는 다 자	게마면	는 면
	장수군	장수군	상 나 대	장수군	장수군	장수고	상 나 디	장수군	상 사 다	상 나 대	상 사 다	상수대	장수记	상 사 대	장수건	상 사 다	상수대	以 小 山
	69	20	71	72	73	74	75	92	77	78	79	80	8	82	83	84	82	86

										ı	
	장 나 대		860	1,292	لان	-	1560	후양되	I	판	ەڭ
	장수 귀		914	1,317	لاث	-	1559	화양기		교	心
	장 수 민	1	727	727	لاث	-	1558	환양되		프	장수고 계대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일 15, 110종 150*호 (옥수동,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 와	00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모255길 7-1, 디동 10*호(사당동,청구빌라)	191	2,291	עכ		1558	(건 (전 (전	πι	此	장수고 계남면
	국(농림축산식품부)	ı	1,949	2,939	무		1467	(전 (전 (고	ᆈ	声	장수 고
	국(농림축산식품부)	ı	898	4,740	다 사		1466	항 등 기	ᆈ	품	ا اث
	국(농림축산식품부)	ı	1,218	12,400	버				J	元	장수 고 게다
**							1462	원 인 기	₽.		_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김*수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4*	8	1,049	ران		1426	80   80	<u>현</u> 현 현	元	
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나평일 3* 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 ± ± ± ± ± ± ± ± ± ± ± ± ± ± ± ± ±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4*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4*	181 81	2,316	על על		1425	진 진 진 60 60 60 4점 4점 4점	회 회 호	품품	사 사 마 마
라복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일 3* 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일 3*	が 数 が 元 ○ * * * * * * * * * * * * * * * * * *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4*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4*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181	2,408	על על על		1424 1425 1426 1462	고 고 고 고 다 60 60 60 60 1점 1점 1점	회 회 회 호	품 품 품	사 수 수 마 마 마
라부드 장수만 계납면 고양도 467~3* 라부도 장수만 계남면 다평일 3* 라부드 장수만 계남면 만독당 장수만 계남면	## な な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안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4*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44*	6111	2,408	රා රා රා රා		1424 1425 1426 1462	지 지 지 진 진 50 50 50 50 50 해 해 해 해 해 해	ह्या ह्या ह्या ह्या ह्या		사 수 수 수 바 바 바 바
라볶도 장수군 계남면 라양도 467~3* 라당도 장수군 계남면 라양도 467~3* 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 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난평안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4*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4*	46 611 181 181	2,408 2,316 1,049	מב מב מב מב מב	-	1423 1424 1425 1426 1462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_ 피   피   피   피   표		사 사 사 사 사 내 내 내 내 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양*회 110동 150*호 (옥수동,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 외 4인 트)	축산식품부) 축산식품부) 숙산식품부) 의 4인 (옥수동,레미안옥수리버젠아파 두군 수군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유수등,레미 성동구 매봉길 15, 양*희 외 4인 (유수동,레미안옥수리버젠아파 장수군	-       국(농림축산식품부)         -       국(농림축산식품부)         -       국(농림축산식품부)         -       국(농림축산식품부)         -       국(농림축산식품부)         -       사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110,8 150*호         10*호(사당동,청구발라)       양*회 외 4인         -       장수군         장수군       장수군         장수군       장수군	898 - 국(농림축산식품부) 1,949 - 국(농림축산식품부) 161  나는한편2552 7-1, 디동 161  나는한편(사단동,청구발라) 727 - 장수군 860 장수군 10218 - 국(농림축산식품부) 1042  대원 15, 105 150*호 104  장수군 105 150*호 105 150*o 105 150*	4,740     898     -     국(농림축산식품부)       2,939     1,949     -     국(농림축산식품부)       2,291     161     남부순환로256일 7-1, 디롱 10*회 4인     사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10*호(사당동,청구빌라)       727     727     727     727       1,317     914     장수군       1,292     860     장수군	구거         4.740         898         -         국(농림축산식품부)           구거         2.939         1.949         -         국(농림축산식품부)           대域         2.291         161         바부순환로2552 7-1, CIS 100호(사당동,정구)받아         0**회외 4인         (옥수동,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 트) 10*호(사당동,정구)받아           1         담         7.27         7.27         -         장수군           1         담         1,317         914         장수군         장수군           1         담         1,292         860         장수군	구처         4.740         898         -         국(농림촉산식품부)           구처         2.939         1.949         -         국(농림촉산식품부)           나 구청         1.949         -         국(농림촉산식품부)           나 부산환로2552         7-1, 다 등         0**회외 4인         사물특별시 성동구 매몽길 15, 10% 후 110% 보기 10% 보기 10% 후 110% 보기 10% 후 110% 보기 10% 후 110% 보기 10% 후 110% 후 110% 보기 10% 후 110%	821 1466 구거 4.740 898 - 국(동림축산식품부) (국(동립축산식품부) (국(동립축산식품부) (국(동립축산식품부) (국(동립축산식품부) (국(동립축산식품부) (국(동립축산식품부) (국(동립축산식품부) (국(동립숙(국(독립숙(국(독립숙(국(독립숙(국(독립숙(국(독립숙(국(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법 합당 1         1462         도로         12.400         1.218         -         국(동림촉산식품부)         국(동림촉산식품부)           법 합양 1         1467         구기         4.740         898         -         국(동림촉산식품부)         국(동림촉산식품부)           법 합양 1         1467         구기         2.939         1.949         -         국(동림촉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몽길 15, 110동 150후 110동 110동 150후 110동 110동 150후 110동 110동 150후 110동 110동 140동 14	수급         제남면         화양리         1462         도로         12,400         1,218         -         국(동리축산식품부)         국(동리축산식품부)           수급         제남면         화양리         1466         구,3         4,740         898         -         -         국(동리축산식품부)         (국(동리축산식품부)           수급         제남면         화양리         1467         구,3         1,949         -         -         국(동리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몽길 15, 1105 100%로           수급         제남면         화양리         1568         1         161         남년산환로2553 7-1, 대통         양*희외 40         (목수동,레미안옥수리버젠아마투)           수급         제남면         화양리         1558         1<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